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11월 25일

신한BNPP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신탁제2호[채권]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3. 자구조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생략> 8.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현행과 같음> 8. "종류형"이라 함은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제2항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6.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6. 종류형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제4항	<신설>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b>종류 C1 수익증권</b> - 투자자격 제한없음  <b>종류 C-i 수익증권</b>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b> <b>1. 종류 C1 수익증권</b> <b>2. 종류 C-i 수익증권</b>  ⑤ <b>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b>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25조 (판매가격)	제25조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b>당해 종류</b>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b>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b> )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b>당해 종류</b>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b>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b> )으로 한다.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조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 <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 )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b> )"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b>당해 종류 수익증권</b> )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조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b>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b> )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b>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b> ③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b>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 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2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3항	<신설>	③ <b>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b>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33조 (이익분배)</p>	<p>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lt;생략&gt;</p>	<p>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b>당해 종류 수익증권별</b>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lt;현행과 같음&gt;</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7조 (수익자총회) 제3항 및 제10항</p>	<p>&lt;신설&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39조 (보수)</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b>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2.20 ]</b>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2.00 ]</b> <b>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0 ]</b> <b>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0 ]</b></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b>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b></p> <p><b>1. 종류 C1 수익증권</b> <b>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2.20 ]</b>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2.00 ]</b> <b>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0 ]</b> <b>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0 ]</b></p> <p><b>2. 종류 C-i 수익증권</b> <b>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2.20 ]</b>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10 ]</b> <b>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0 ]</b> <b>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0 ]</b></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p>	<p>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4. &lt;생략&gt; 5.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9. &lt;생략&gt; ③ &lt;신설&gt;</p>	<p>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b>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b>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4. &lt;현행과 같음&gt; 5. <b>전체</b>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9. &lt;현행과 같음&gt;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b>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b> <b>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b></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1. &lt; 생략 &gt; 2. 법 시행령 제268조 <b>제3항</b>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하 생략)</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1. &lt; 현행과 같음 &gt; 2. 법 시행령 제268조 <b>제4항</b>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하 생략)</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3항</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b>다만 해당 증권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항</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7조(수익자총회) 제5항</p>	<p>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7조(수익자총회) 제7항</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b>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b> <b>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b> <b>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b> <b>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b> <b>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b></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7조(수익자총회) 제8항	<p>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b>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b></p>	<p>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b>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b></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7조(수익자총회) 제9항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제1항	<p>① <b>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b></p>	<p>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b>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b> 2. <b>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b></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1항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2. &lt;생략&gt;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b>신설</b>) 4. &lt;생략&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2. &lt;현행과 같음&gt;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b>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 4. &lt;현행과 같음&gt;</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47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항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lt;<b>신설</b>&gt;</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b>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p>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5항, 제 6항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lt;현행과 같음&gt;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b>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lt;현행과 같음&gt;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b>법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p>
3. 자구수정 :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p>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lt;생략&gt;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까지 가능한다.</p>	<p>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lt;현행과 같음&gt;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b>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제17조 제1호의 모두투자신탁의 비중 조절시 설정 및 환매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p>
3. 자구수정 :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2항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lt;<b>신설</b>&gt;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b>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3. 자구수정 및 운용규가: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b>신설</b>)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b>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b>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3. 자구 수정: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p>제46조(미지급금의 처리) ①~② &lt;생략&gt;</p>	<p>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2. 종류형 변경 및 C-수익증권의 신설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5.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	-----	-----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lt;신설&gt;</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p> <p><b>종류 C1 : 제한없음</b> <b>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b>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lt;신설&gt;</p>	<p>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b>종류 C1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20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0%</b></p> <p><b>종류 C-i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01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b></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p>	<p>제2부 11. 매입 및 환매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lt;신설&gt;</p>	<p>제2부 11. 매입 및 환매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b>종류 C1 : 제한없음</b> <b>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b>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lt;신설&gt;</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b>종류 C1 : 제한없음</b> <b>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b>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lt;신설&gt;</p>	<p>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b>종류 C1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20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0%</b></p> <p><b>종류 C-i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01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b></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신설)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b>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b>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p>	<p>(4)반대매수청구권 (단서 신설)</p>	<p>(4)반대매수청구권</p> <p>- <b>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b> - <b>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b></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b>인수계약을 체결한 자</b>,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b>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b></p>	<p>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b>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b>,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b>매출인</b></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b>-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b>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b>행사내용</b></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b>-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b>  <b>-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b>  <b>-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b>          (현행과 같음)  <b>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b>  <b>-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b></p>
<p>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3년 10월 31일)</b></p>
<p>4.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b>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3년 10월 31일)</b></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 종류별 가입자격  <b>&lt;신설&gt;</b></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b>종류 C1 : 제한없음</b>  <b>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b>  <b>-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b>  <b>-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b></p>
<p>1. 종류형 변경 및 C-i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b>&lt;신설&gt;</b></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b>종류 C1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20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0%</b>  <b>종류 C-i :</b>  <b>집합투자업자보수 : 연간 0.2200%</b>  <b>판매회사보수 : 연간 0.0100%</b>  <b>신탁업자보수 : 연간 0.0300%</b>  <b>일반사무관리보수 : 연간 0.000%</b></p>
<p>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3년 10월 31일)</b></p>